장학금지급규정

제 정	:	2003. 10. 1
개 정	:	2004. 1. 2
개 정	:	2004. 11. 1
개 정	:	2005. 7. 20
개 정	:	2007. 9. 1
개 정	:	2008. 9. 1
개 정	:	2009. 1. 20
개 정	:	2009. 9. 1
개 정	:	2010. 3. 1
개 정	:	2010. 6. 1
개 정	:	2011. 7. 1
개 정	:	2012. 1. 1
개 정	:	2012. 6. 1
개 정	:	2013. 1. 1
개 정	:	2013. 9. 1
개 정	:	2015. 8. 1
개 정	:	2016. 8. 1
개 정	:	2017. 4. 18
개 정	:	2018. 5. 21
개 정	:	2019. 2. 11
개 정	:	2020. 3. 1
개 정	:	2020. 6. 15
개 정	:	2020. 12. 22
개 정	:	2021. 8. 20
개 정	:	2023. 5. 4
개 정	:	2024. 1. 12
개 정	:	2024. 11. 28
개 정	:	2025. 02. 27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6조에 의거하여 각종 장학금을 공정하고, 효율적으로 운영,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4.01.12.>

제2조(적용범위) 장학생의 선발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관련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3조(사무분장) 장학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23.05.04., 2024.01.12.>

제2장 장학위원회

제4조(위원회 설치 · 구성) ①장학금 지급의 공정성과, 효율성을 기하고, 그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, 경영관리처장, 4명 내외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12.22., 2023.05.04., 2024.01.12.>

③전항의 교직원은 총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3.05.04., 2024.01.12.>

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
2.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3. 지급액의 책정기준 및 배정심사에 관한 사항
4. 외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
5. 학생 해외 장학연수에 관한 사항
6. 장학금지급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회의는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②심의사항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3장 장학금의 종류 · 신청자격 · 지급금액

제7조(장학금의 종류 · 자격 · 지급금액) ①장학금의 종류, 자격 및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확정된 지급금액이라도 외부장학금을 수혜할 경우에는 외부장학금을 우선하여 확정된 지급금액에서 외부장학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.
②외부장학금은 국가기관, 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이는 각 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③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 총액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별표 1에 기재된 근로장학금, 외부지정장학금, 학업 장려 등을 위해 명시된 장학 혜택은 예외로 적용한다.
④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장학금의 종류·자격·지급금액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장학생의 자격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1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벌이 해제된 후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
2. 기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 자격을 제한한 자
3.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
   가. 1학기 내지 6학기 : 15학점 미만. 다만, 성적경고(예비성적경고)자, 해외교환학생파견자는 12학점 미만
   나. 7학기 : 9학점 미만
4. (삭제)<삭제 2020.12.22.>

제4장 장학생 선발

제9조(장학금의 신청) ①각종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이후 학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5.04., 2024.01.12.>
1. 보훈장학금 : 수업료 면제대상 증명서 1부<개정 2024.01.12.>
2. 북한이탈주민장학금 :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
3. 국가고시장학금 : 국가고시 합격증 사본 1부
4. 기타 교학지원처에 신청을 요하는 장학금 : 해당 구비서류 1부

제10조(지급계획서의 심의와 승인) (삭제)

제11조(장학생의 확정) 교학지원처는 수혜대상 학생에 대하여 자격요건, 이중추천 여부, 지급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<개정 2023.05.04., 2024.01.12.>

제12조(장학생 공고) 삭제<개정 2023.05.04.>
제13조(장학증서 발급) 교학지원처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증서를 발급하고, 이를 장학증서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.<개정 2023.05.04., 2024.01.12.>

제5장 장학금 지급

제14조(지급방법) ①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감면금액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②각종 장학금에 이중으로 선발되는 경우 해당 장학금 중 지원금액이 많은 장학금만 지급한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③해외연수장학금 및 해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등 해외대학(원)의 학습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한화로 지급한다. 단 환율은 지급하는 달의 첫째 날 최고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.<신설 2024.01.12.>
제15조(현금지급 금지) 장학금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도서구입비 및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16조(등록금의 환불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.
1. 장학생으로 확정된 학생이 이미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
2. 등록기간 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

제17조(지급결정 유효기간)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장학금은 아래와 같다.<개정 2020.03.01.>

사 유 발 생 일	유 효 금 액
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	장학금 전액
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	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

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입대, 질병, 육아, 장기인턴십, 창업 휴학 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이 복학 학기까지 유효하다(증빙서류 필요).
③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제18조(지급결과 보고) 교학지원처장은 장학금지급결과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5.04., 2024.01.12.>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기숙사비 관련 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각 장학금의 성적 기준 적용은 2010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, 원각불교장학금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다만, 원각불교장학금 관련 사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경과조치)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기준 신설(2024.01.12.)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 세계 유명 대학의 기준은 입학년도 당시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(공지)를 따른다. 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선발인원은 연간 1명 이내로 한다. (단, 입학년도에 선발 공고가 미공고된 경우 직전년도 공고(공지)를 따른다.)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장학금 종류 · 자격 · 지급금액<개정 2024.01.12., 2025.02.27.>

종 류			수혜자격	지급금액	비고
신입생장학금	원각불교 장학금		신입생으로 입학한 자(1학년 1학기에 한함)	수업료 전액면제<개정 2024.01.12.>	
	전교수석 장학금		항목 삭제		2011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
			전교 수석입학자. 단,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.50 이상<개정 2024.01.12.>	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01.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 - 학업장려금 지원(연간 150만원)	2020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(기수혜자 혜택 유지)
	수시우수 장학금		수시모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단,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.50 이상<개정 2024.01.12.>	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01.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	2021학번 이후
	수능성적 우수 장학금	A	항목 삭제		2011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
			수능 국어, 영어, 수학 영역 중 2개영역이 1등급 이내인 자. 단,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.50 이상<개정 2024.01.12.>	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01.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 - 학업장려금 지원(연간 100만원)	2020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(기수혜자 혜택 유지)
	정시우수 장학금		정시모집 수능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영역 중 2개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. 단,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.50 이상<개정 2024.01.12.>	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01.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	2021학번 이후
금강인재장학금	학업최우수 장학금		매학기 각 학부(전공)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. 단,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.20 이상<개정 2024.01.12.> (직전학기 교환학생은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)	해당 학기 - 등록금 전액면제 - 학업장려금 지원(20만원)	
	비교과참여장려 장학금		삭제<개정 2023.05.04.>	삭제<개정 2023.05.04.>	2023학년도 1학기부터 <개정2023.05.04.>
	천태금강 장학금		불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 함양 및 세계적 역량의 인재양성 등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총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	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- 3.20 이상 :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01.12.> - 2.90 이상 : 등록금 50% 면제 <개정 2024.01.12.> * 단, 해외 교환학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	
	금강복지장학금 (편입생)		편입생으로 입학한자로서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총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	등록금 전액면제(3학년 1학기에 한함)<개정 2024.01.12.>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- 3.00 이상 : 등록금 전액면제(3학년 2학기에 한함, 이후 천태금강장학금 기준에 따름)<개정 2024.01.12.>	2021학번 이후 편입생에 한함
	국가고시 장학금	A	재적 중 국가고시(5급 공채, 공인회계사, 관세사, 세무사, 노무사, 변리사 등) 1차 시험 이상 합격한 자	사유발생 다음 학기부터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,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급(1회에 한함) 단, 휴학생은 복학 후 지급	
		B	재학 중 국가고시 준비반 입반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. - 모의고사 및 성적우수자 - 교수 추천자 단,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.30 이상<개정 2024.01.12.>	매학기 인원을 산정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	

종 류		수혜자격	지급금액	비고
	공로장학금	총학생회, 학교부속기관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. 단, 활동기간의 매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.20 이상 <개정 2024.01.12.>	사유발생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려금 지급 - 총학생회장 : 50만원 - 총학생회 부회장: 30만원 - 그 외 : 20만원 <개정 2024.01.12., 2025.02.27.>	총학:2명 부속기관 및 학생자치 기구:2명 이내 <개정 2025.02.27.>
	봉사장학금	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.	봉사활동실적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	
	학술활동 장학금	교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.	해당학기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	
	해외연수 장학금	-「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 -「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」에 의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 단, 복수학위 과정 연수 후 본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(관련 학비 지원지침 적용)	「국내 및 해외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」,「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」 및 대외교류위원회 심의에 근거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	
	외국인학생 장학금	학교 또는 재단 초청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학생. 단, 직전학기 성적이 3.00 이상<개정 2024.01.12.>	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01.12.> - 학업장려금 지원(연간 120만원)	
	근로장학금	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. 단,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.00 이상<개정 2024.01.12.> 학교 의무 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선발(성폭력・가정폭력 예방교육, 자살 예방교육, 인터넷중독 예방교육, 장애인식 개선교육)	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	
	<u>보훈장학금</u>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<개정 2024.01.12.> - 신입생: 해당자 - 재학생: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※단,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	졸업시까지(8학기) - 국가유공자 본인: 등록금 전액 - 국가유공자(손)자녀: 등록금 전액(본교 및 국고 각 50%부담)	
	교육보호 장학금	항목 삭제		
		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(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후 관련 해당 서류 제출)	등록금 전액(학교 50%, 국고 50%) - 수업료 8개 학기(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) <개정 2024.01.12.> -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당해 학기 보조를 제한하며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에 포함함	2021학번 이후
		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제3국출생 탈북자녀인 자 ※ 단,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(기본증명서 상 "국적선택"란에 "대한민국"으로 명시되고 "법무부장관"에 통보된 자)	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- 3.20 이상 : 등록금 전액면제 - 2.90 이상 : 등록금 50% 면제 <개정 2024.01.12.>	2021학번 이후
	복지 장학금 A	신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개정 2024.01.12.>	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01.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	2012학번 이후
	복지 장학금 B	신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개정 2024.01.12.>	2년간(4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01.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	
	기여장학금	학업장려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	유치 외부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금액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<개정 2020.12.22.>	2020학년도 이전 신・편입생
		학업장려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	유치 외부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 <개정 2020.12.22>	2021학년도 이후 신・편입생 <개정 2023. 05.01., 2025.02.27.>

종 류		수혜자격	지급금액	비고
	사생회장학금<신설 2024.01.12.>	해당 학기 사생회 층장으로 선발된 자<신설 2024.01.12.>	매월 30만원 지급(단, 학기 중에 한하며, 방학은 제외. 또한 매월 사생회 활동보고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함) <신설 2024.01.12.>	학기당 3명 이내<신설 2024.01.12.>
금강 우수 졸업 진학 장학금	**해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**	해외우수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3의 기준에 충족하는 자.<개정 2024.01.12.>	지급기간은 2년이며 연간 영어권 14,000USD, 일어권 10,000USD, 중어권 7,000USD 지급	연간 10명 이내
	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	본교가 정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. 단, 졸업성적평점평균이 4.00 이상.<개정 2024.01.12.> (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 지침 적용)	지급기간은 3년이며 연간 1,000만원 지급	연간 2명 이내
외부 장학금	**기부장학금**	기부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.	기부장학금의 유형에 따라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	
	보훈장학금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<개정 2024.01.12.> - 신입생: 해당자 - 재학생: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※단,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	졸업시까지(8학기) - 국가유공자 본인: 등록금 전액 - 국가유공자(손)자녀: 등록금 전액(본교 및 국고 각 50%부담)	
	교육보호 장학금 (북한이탈주민)	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(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후 관련 해당 서류 제출)	등록금 전액(학교 50%, 국고 50%) - 수업료 8개 학기(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) <개정 2024.01.12.> -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당해 학기 보조를 제한하며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에 포함함	

* 계속 장학생의 경우(전교수석 ·수시우수·수능성적우수·정시우수장학금) 수혜자격 미달 시 졸업까지 해당 장학금 지급 중단 <개정 2024.01.12.>

(별표 2) 천태금강장학금 선발 기준<개정 2024.01.12., 2025.02.27.>

평가항목	매학기 기준	세부내용
비교과활동	매학기 전략혁신처에서 인정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하는 학생 <개정 2023.05.04.>	학생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전략혁신처에서 확인 <개정 2023.05.01.>
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	10 GOLD 당 0.1점으로 환산하여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과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장학생 선발 기준 이상	GOLD사용신청서를 전략혁신처에 제출<개정 2023.05.04.>
GGU콘서트 참여 <개정 2023.05.04., 2025.02.27.>	GGU콘서트 참여율이 70%미만 시 장학생 선발 제외 <개정 2023.05.04., 2025.02.27.>	교학지원처 출석 확인 및 출석 통계 정리 <개정 2023.05.04., 2025.02.27.>
시험부정행위	부정행위는 1회이상 적발 시 선발제외	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 시 적용 (학생상벌위원회 회부)
학칙위반 및 평소품행	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	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적용

* 학사경고자의 경우 학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 프로그램 미이수 시 장학생 선발에 제한될 수 있음<신설 2024.01.12.>

(별표 3)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기준<신설 2024.01.12.>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
<tr><td>지원기간</td><td>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지원</td></tr>
<tr><td>지원자격</td><td>–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.80 이상인 자로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– 대학 졸업 후
가. 석사과정: 2년(군 복무기간 제외)이 경과하지 않은 자
나. 박사과정: 4년(군 복무기관 제외)이 경과하지 않은 자
(단,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)
– The Times 기준 World University Ranking 100위 이내의 해외우수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(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진입한 대학)
– 유학국 별 지정 외국어시험 성적 취득자(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수에 한함)
<table>
<tr><th>국가</th><th>시험명</th><th>기준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어권</td><td>TOEFL</td><td>iBT 88이상 / PBT 570이상</td></tr>
<tr><td>IELTS</td><td>Overall Band Score 5점 이상</td></tr>
<tr><td>유럽어권</td><td colspan="2">해당 국가의 공인된 외국어시험 합격자</td></tr>
<tr><td>일본어권</td><td>JLPT</td><td>* 일본어 관련 전공자 : JLPT 1급(N1) 이상 또는 JPT 715점 이상
* 일본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: JLPT 2급(N2) 이상 또는 JPT 540점 이상</td></tr>
<tr><td>중국어권</td><td>HSK</td><td>* 중국어 관련 전공자 : (신)6급
* 중국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 : (신)5급 210점 이상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출서류</td><td>–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금 신청서 1부.
– 자기소개서 1부.
– 연구계획서 1부.
– 유학국별 지정 외국어 성적표 사본 1부.
– 해외대학원 입학허가서 및 등록 관련 서류 각 1부.
–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</td></tr>
<tr><td>선발절차</td><td>– 장학위원회에서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심사하며, 면접평가를 통해 연간 10명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
– 장학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지원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.
– 면접점수의 최저, 최고점은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한다.
– 장학생 선발 후 최초 장학금 지급 전 대학 변경에 대한 타당한 사유 발생 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.</td></tr>
<tr><td>장학금지급</td><td>– 장학금은 연간 지급액을 상·하반기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. 단 1년 3학기제의 경우 예외로 한다.
– 최초지급액은 입학허가서를 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고, 차기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– 언어권별 장학금 지급금액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.
<table>
<tr><th>국가</th><th>지급기간</th><th>연간지급액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영어권·유럽어권</td><td rowspan="4">2년</td><td>14,000$</td><td rowspan="3">학위과정이 1년 3학기제인 경우
(연간지급액/2)*3회로 지급</td></tr>
<tr><td>일본어권</td><td>10,000$</td></tr>
<tr><td>중국어권</td><td>7,000$</td></tr>
<tr><td>기타 언어권</td><td colspan="2">한국정부 국비유학 장학생의 지급금액을 참고하여
그 금액이 유사한 언어권의 지급액을 지급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장학금 지급제한</td><td>– 장학금 지원기간 중 학업성적이 80/100점만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– 휴학 시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복학하는 학기에 재지급한다.
– 외부장학금 수혜 시 이중지원이 가능하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</td></tr>
<tr><td>장학금 환수</td><td>– 장학금 지급 후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한다.
– 장학금 수혜기간 중 자퇴, 제적 등을 포함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.</td></tr>
<tr><td>기타사항</td><td>–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</td></tr>
</table>